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319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방용문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5, 6, 7, 9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10.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 6, 7, 9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1. 12. 14. 접수 제18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10. 2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354,4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35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409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14. “C은 원고에게 10,963,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9. 10.부터 1997. 10. 19.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C의 부친이자 피고의 남편인 D은 2021. 10.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부동산’으로 번호를 붙여 지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C, G, H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10. 25.2) C 및 나머지 자녀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1. 12. 14. 접수 제18199호로 2021. 10.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2. 1. 13. 1조합에 이 사건 4, 8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1조합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C은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21. 10. 25. 당시 C에 대하여 위 판결에 따른 10,9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13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 2, 3, 5, 6, 7, 9 부동산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5, 6, 7, 9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10. 25.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 2, 3, 5, 6, 7, 9 부동산 중 위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4, 8 부동산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후인 2022. 1. 13. 이 사건 제4, 8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8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자체를 그에게 원물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8 부동산의 2022. 10. 25.자 기준 시가 합계액은

119,303,9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도 같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가 취득한 C의 상속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18,354,440원($= 119,303,900원 \times 2/13$, 원고가 구하는 대로 10원 미만 버림)으로 볼 것이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30.을 기준으로 합계

60,691,768원[$= 원금 10,963,000원 + 1997. 9. 10.부터 1997.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

$168,199원(= 10,963,000원 \times 40/365) + 1997. 10. 20.부터 2022.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49,560,569원(= 10,963,000원 \times (25 + 42/365))$]이 된다. 그런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4, 8 부동산 중 상속지분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지분 가액 18,354,440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4, 8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8,354,4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18,354,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별지

기재에 비추어 이는 '18,354,44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10호증)에는 작성일자가 2021. 1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은 '2021. 10.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으로 소급하는 점(민법 제1015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시기를 2021. 10. 25.로 인정한다.